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농산물검사관·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대여 금지 및 위반시 처벌규정 마련과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4년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일부개정(법을 제16781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검정기관 갱신을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농산물검사관 자격 취소 사유 및 갱신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정기관 갱신을 위한 절차 규정 마련(안 제130조의2)

- 검정기관 갱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고, 갱신 기준 등은 규칙 제130조 준용

나. 농산물검사관 자격 취소 규정 추가(안 별표21)

-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 취소’ 규정 신설(법 제83조제1항제3호 개정 사항 반영)
- ‘명의를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자격 취소 규정 신설(법 제83조제1항제4호 개정 사항 반영)

다. 검정기관 지정수수료 항목에 ‘갱신’ 추가(안 별표33)

라. ‘검정기관 지정신청서’에 ‘갱신’ 항목을 추가하고(별지 제75호 서식), ‘검정기관 지정서’에 ‘유효기간’ 설정(별지 제77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부내의견조회(‘20.1월), 규제심사(‘20.2월), 입법예고(‘20.3~4월), 법제처 제출(‘20.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0조의2(검정기관의 갱신 지정절차 등) ① 법 제99조제5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다지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검정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75호 서식의 검정기관 갱신 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 갱신 기준, 심사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0조를 준용한다.

별표 21 제2호에 다,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3호	자격취소		
라.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4호	자격취소		

별표 33 제7호 “지정신청”을 “지정신청(신규·갱신)”으로 한다.

별지 제7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검정기관 []지정
[]갱신 신청서

* []란에 V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	-----	------	-----

신청인	기관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업무 범위	분야	☐ 품위 · 일반성분 검정 ☐ 무기성분 · 유해물질 검정	
	구분	☐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 농지(토양) ☐ 용수(하천수 · 호소수) ☐ 용수(먹는물 · 먹는샘물) ☐ 자재(비료 · 축분 · 깔짚 등)	
	검정항목	☐ 품위 ☐ 발아율 ☐ 도정률 ☐ 무기성분 ☐ 유해 중금속 ☐ 잔류농약 ☐ 일반성분 ☐ 항생물질 ☐ 곰팡이 독소 ☐ 방사능 ☐ 병원성 미생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9조제2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제1항, 제130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정기관 지정, 갱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검정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및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 각 1부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9조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검정기관 지정서	수수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에 따른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 호

검정기관 지정서

1. 기관명(대표자):
2.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3. 실험실 소재지(전화번호):
4. 업무 범위:
5. 지정일:
6. 유효기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제5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 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직인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130조의2(검정기관의 갱신 절차 등) ① 법 제99조제5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다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검정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75서식의 검정기관 갱신 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21] 농산물검사관의 자격 취소 및 정지에 대한 세부 기준 (제106조 관련)					[별표 21] 농산물검사관의 자격 취소 및 정지에 대한 세부 기준 (제106조 관련)				
2. 개별기준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1회	2회	3회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u><신설></u>					다. 다른 사람 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법 제83 조 제1항	자격 취소		

제 호

검정기관 지정서

1. 기관명(대표자):
2.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3. 실험실 소재지(전화번호):
4. 업무 범위:
5. 지정일:

<신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 9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0조제5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 [백상지 120g/㎡]

제 호

검정기관 지정서

1. 기관명(대표자):
2.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3. 실험실 소재지(전화번호):
4. 업무 범위:
5. 지정일:
6. 유효기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 9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0조제5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 [백상지 120g/㎡]